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3. 8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921-5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

거창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「2022년도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」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3. 7.

거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‘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’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
-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
- 신청기간 : 2022. 3. 7.(월) ~ 3. 21.(월)
 - ※ 사업비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 수시로 선정 추진할 수 있음.
- 지원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
- 사업물량 : 90대 정도
- 지원내역 :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%지원
 - 자부담금 :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~12.5%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(단,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)
- 지원금액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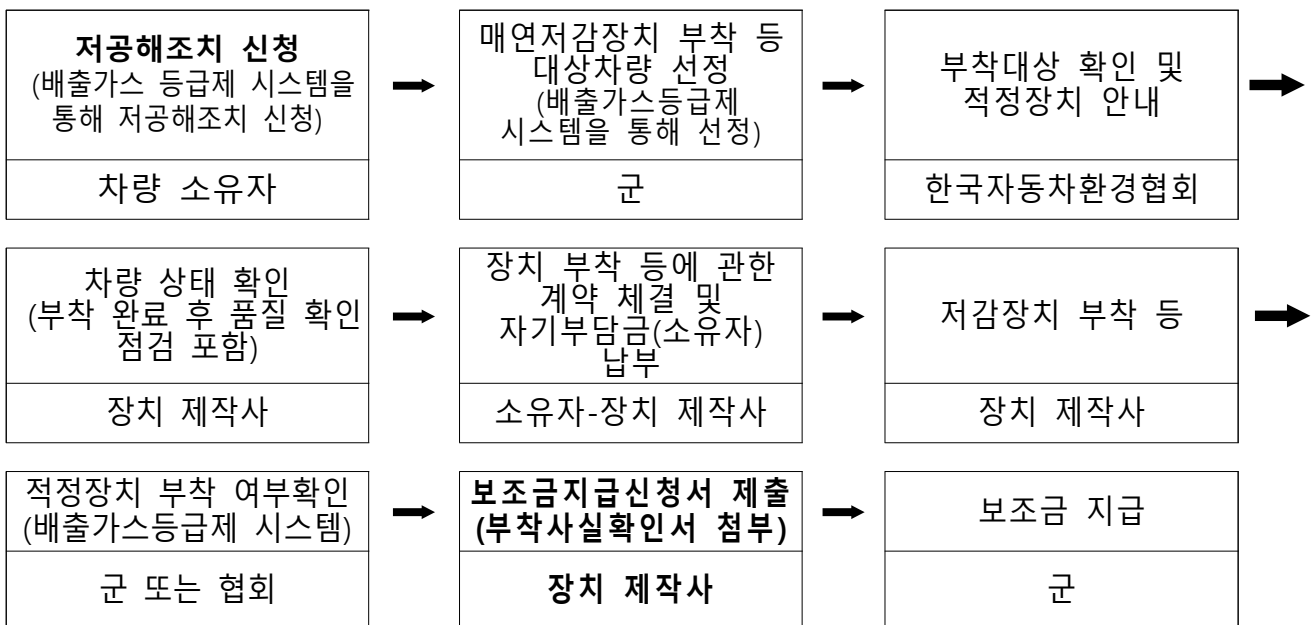
구 분		장치 가격				유지 관리비
		계	보조금	자기부담		
				금액	부담율	
DPF	자연대형	3,933	3,540	393	10%	462
	자연중형	3,499	3,150	349	10%	462
	자연소형	※ 대상자 선정시 안내 예정				
	복합대형	6,507	5,857	650	10%	462
	복합중형	4,786	4,308	478	10%	462
	복합 소형	RV, 승합 화물	2,811 2,811	2,460 2,530	351 281	12.5% 10%

※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

2. 신청 및 지원대상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-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 등급 경유차량
- 대상자 선정 조희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
- 공고일 기준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
-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이 완료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

3. 사업절차



4.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

■ 인터넷 신청방법 □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

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” 홈페이지에서 신청(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>)

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『저공해조치 신청』 클릭 →
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→ 차량조회 후 『저감장치 부착』 선택
 → 저공해신청 완료

<주의>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본 신청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에 저공해조치신청한 사항을 취소하고, 본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.

- 신청 매뉴얼 : [붙임 1] 참조
- 인터넷 신청 불가시 : 자동차등록증, 휴대폰 지참하여 군청 환경과 방문

5. 대상자 선정 기준(우선순위 : ①→②→③→④→⑤)

- ①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3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(서울,인천,경기)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
- ② 생계형 차량(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
- ③ 영업용 차량(영업용 번호판 부착 차량)
- ④ 총중량 3.5톤이상 차량
- ⑤ 최근에 제작된 차량(부착 후 의무사용을 감안)

○ 위 우선순위(우선 지원)대상자 중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터넷 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우선순위 지원이 가능함.
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(940-8914) 가능567
우편제출은 등기만 가능, FAX의 경우 필히 수신내용 확인
- 차량별 제출서류
 - 운행제한 위반차량 : 과태료 영수증, 사전통지 공문
 - 생계형 차량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 - 영업용차량 : 자동차 등록원부

6.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후 절차

- 선정 통보일 :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(문자 발송)
 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절차
 - 한국자동차환경협회 : 문자 및 전화로 부착대상 및 적정장치 안내
 - 장치 제작사 : 차량 상태 확인 및 계약 체결, 장치 부착

7. 참여자 혜택

- 제작사의 장치보증기간(A/S) 3년으로 1종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에는 연 1회씩 3년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
- 환경개선부담금은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
-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
 - *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검사기관(교통안전공단, 한국환경공단 등)에 지급함

8. 유의사항

- ①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하며,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 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
-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
 - 차량 말소 등 매연저감장치 탈거할 경우에는 장치를 반납해야 함
[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(☎1544-8648) 대행]
 -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의무운행 기간(2년) 이내에 폐차, 수출 등의 이유로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)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
- ③ 의무운행 기간 이내에 수출·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)에 따라 지원 금액 회수
- ④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불가
- ⑤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
- ⑥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「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(환경부 고시 제2016-136호)에 따라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함
- ⑦ 당해 연도 내에 추가 예산 발생 시 차순위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

9. 문의처 :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(☎ 055-940-3493)

10. 기 타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 및 거창군 유권해석에 따름

- 붙임 1.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현황 1부.
2. 저공해조치 신청 매뉴얼 1부.

【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현황】

구 분	불가차량 종류
엔진종류	662935, 661, 662925, D0846*, D2156*, D2848*, D4BA, D4BB, D4BF, D4BX, JT, J2, JS, RE, RT, HW, RD8, 4BA1, S2, SF, MD30, D1146, MD30, D2366, H100, J08ETL, SL*, SH*, ZB*, D4AN, 8DC40A, D4AK, DC1203, EM100, H07C(90년이전), H07C-D(90년이전), HA, HD4108, R2, SC, SS, V300, VN, XA, XB, XD3P
차 명	갤로퍼, 무쏘, 세레스, 이스타나, 코란도, 그레이스, 기아복사, 기아타이탄, 레토나, 맥스, 로얄, 바네트, 베스트, 비네트, 새한(제미니픽업포함), 스틸라, 시보레, 쉐라토, 아반떼, 포니, 포드, 휘미리, SV, 카니발(135마력이하)
사용용도	구급차, 구조공작차, 변압차, 싼타페4륜구동
수 입 차	유니목, 푸조, 쉐보레, 아우디, 벤츠, 도요다, 랜드로버, 볼보, 스카니아, 만트럭, 닛산, 다임러크라이슬러, 메르세데스벤츠, 에프씨에이, 한국상용차, 지엠케이, 케이엔티티, 포드

※ *표시된 엔진 : D0846* 엔진명에 “D0846”을 포함하는 모든엔진

불법투기 예방 CCTV(영상감시장치)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

『불법투기 예방 CCTV(영상감시장치)』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4일

거 창 군 수

1. 행정예고명 : 불법투기 예방 CCTV(영상감시장치)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
2. 시 행 청 : 경상남도 거창군
3. 행정예고기간 : 2022. 3. 4. ~ 2022. 3. 24.(21일간)
4. 의견제출기간 : 2022. 3. 4. ~ 2022. 3. 24.(21일간)
5. 행정예고(공고)방법 : 거창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
6. 관련근거
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·운영 제한)
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7. 주요내용

- 설치목적 :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 유도
-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/녹화
- 설치대수 : 이동식 CCTV 25대
- 설치위치

순번	읍 면	설 치 장 소	비 고
계		총 25개소	
1	거창읍	거창읍 대동리 33	
2		거창읍 송정리 771-1	
3		거창읍 가지리 434-1	
4		거창읍 중앙리 42-3	
5		거창읍 정장길 205	
6	응양면	응양면 노현리 260-2	
7		응양면 노현리 1096-1	
8	고제면	고제면 농산리 1189-3	
9		고제면 노현리 1096-1	
10	북상면	북상면 소정리 1421-1	
11		북상면 소정리 1296	
12	위천면	위천면 남산리 308-2	
13		위천면 강천리 342-5	
14	마리면	마리면 거안로 1070	
15		마리면 거안로 1084	
16	남상면	남상면 둔동리 1557	
17		남상면 진목리 562	
18	남하면	남하면 둔마리 264	
19		남하면 둔마리 1145-1	
20	신원면	신원면 과정리 259	
21		신원면 세안마을 24-3	
22	가조면	가조면 마상4길 81	
23		가조면 대초리 707	
24	가북면	가북면 우혜리 산45-12	
25		가북면 중촌리 429	

8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필요사항 등

다. 제출방법

○우편 :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(상림리 64-1) 거창군청 환경과

○팩스 : 055-940-3759

라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마. 문의처 : 거창군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(☎ 055-940-3503)

주 민 의 견 제 출 서

행정예고명	불법투기 예방 CCTV(영상감시장치) 설치 행정예고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주민(법인) 등록번호	-
	주 소		전화번호	
설치예정위치	의견제출 내용			
불법투기 예방 CCTV(영상감시장치)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2022년 월 일	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	
거 창 군 수 귀하				

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공고

『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』 제3조에 따라 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3. 8.

거창군수

- 사업명 : 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
- 신청기간 : 2022. 3. 18.(금) ~ 3. 24.(목) 18:00 (5일간)
- 사업대상 : 관내 향노화제품 생산 단체, 법인 등
- 지원내용 : 2개소 / 개소당 25백만원 한도 지원 (보조금 70%, 자부담 30%)
- 사업대상 : 관내 향노화제품 생산 단체, 법인 등
- 사업내용 : 향노화 제품개발을 위한 효능검사료, 기능성 평가, 디자인 개발비용 등 지원

※ 디자인 개발·효능검사 등 연구비는 보조금(70%), 재료구입·시제품 생산비용은 자부담(30%) 집행

※ 보조금(70%)은 연구기관에 위탁·계약 필요

※ 식품의약품안전처 "식품의 기준 및 규격" 및 "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"에 따른 한시적 식품원료 인증 가능한 제품개발

- 접수방법 : 산림과 향노화담당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(☎940-3393)
- 신청서류

- 신청서 1부.
- 향노화제품개발 현황 1부.
- 향노화제품 생산 단체 및 법인 증빙서류(법인·개인 사업자등록증)
-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 판매실적확인 자료) 1부.

-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

- 사업신청 ⇒ 신청서 검토 및 심사 ⇒ 보조금심의회 심의 ⇒ 대상자 확정

- 신청서 제출 및 문의 : 거창군 산림과 향노화담당(☎ 940-3393)

붙임 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신청서

< 붙임 >

2022년도 향노화 제품개발 지원 사업신청서

1. 보조사업자 기본사항

보조사업자명				설립일	
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			등록기관	
사업유형				구성원수	
대표자	성명		연락처	(휴대폰) - - (e-mail)	
	생년월일				
전화번호(代)					
주소		(-)			
실무자			연락처	(휴대폰) - - (e-mail)	

2. 사업개요

사업명	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지원사업	사업유형	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◦ 		
주요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◦ ◦ 		
사업기간	◦ 2022년 월 ~ 2022년 월		
기본신청현황	◦ 기초향노화 원재료 : , ◦ 제품 :		

3.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부담
금액					
비율(%)					

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. 2. 향노화 제품개발 현황 3. 단체 소개서 1부.

「지방보조금법」 제5조(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)에 따라 향노화 제품개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인 : 단체명
대표자 (인)

거창군수 귀하

사업계획서

1. 사업명 : 2022년 향노화 제품개발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
-

3. 사업개요

가. 보조사업자

- 단체명 :
- 대표자 : (생년월일 : , 성별 :)
- 주소 :
- 연락처 :

나. 사업기간 : 2022. . . ~ . . .

다. 장소 :

라. 사업비 : 천원

- 군비 : 천원
- 자부담 : 천원
- 자부담 확보방안 :

※ 디자인 개발·효능검사 등 연구비는 보조금(70%), 재료구입·시제품 생산비용은 자부담(30%) 집행

마. 추진방법 : ○○단체명 자체 추진

바. 주요내용

- 사업추진계획

4. 사업비 산출내역

○ 총사업비 (단위:천원)

계	국비	도비	군비	자부담	비고

○ 항목별 세부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산출내역	재원				
	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부담
계						
예)디자인비						
시제품생산비						
...						

5. 세부 추진일정

일정	추진내용	비고
2022. . .		

6. 기대효과

-
-

7. 과거 추진실적

(단위: 천원)

연도	사업명	사업기간	주요 추진내용	사업비			비고
				계	보조금	자부담	

○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

-

항노화 제품개발 현황

□ 사업신청 단체(법인) 현황

- 단체(법인)명 :
- 대표자명(생년월일) :
- 단체(법인) 주소 :
- 단체(법인) 주요 생산현황 / 재무제표 첨부
 - 자본금 :
 - 주요생산품목 :
 - 생산 및 판매실적 :

□ 제품개발 시범사업 세부사항

- 기초 항노화 원재료명 :
 - ※ 식품의약품안전처 “식품의 기준 및 규격” 및 “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”에 따른 한시적 식품원료 인증 가능한 제품개발
- 제품명 :
- 주요효능 :
- 제품개발 세부사항 (디자인 개발 사항 및 효능검사 관련사항 등)
 -
- 기타 제품 관련 소개 (자유롭게 기술)
 -
 -
 -

단 체 소 개 서

단 체 명	○○단체명			
주소 및 연락처	주 소	(우.00000)		
	연락처	전화 : 신청사업담당자 :	FAX E-Mail	055- @
	홈페이지	-		
고유번호 등	등록기관	○○세무서	등록일	0000. 00. 00
	법인번호	고유번호 000-00-00000		
설립목적	○○추진			
단체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0. 00. 00. : 비영리법인등록(진주세무서) ○ '00. 00. 00 : 제1회 ○○사업 지원 ○ '00. 00. 00. : ○○단체 변경등록 (변경 전 명칭 : ○○단체명) 			
조직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체대표 : 위원장, 성명, 홍길동, 현직업, 농업(이장) 연락처 010-000-0000 ○ 사무국 근무자 현황 : 00명 (사무국장 0, 기획 0, 차장 0) ○ 회원수 : 00명 ○ 조직도(기구표) : 위원장-사무국장-기획팀장-사무차장-이사(00명) 			
당해연도 예산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산총액 : 000천원 -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18.86%), 정부보조(62.30%), 시비보조(18.84%), 기타(%) 			
최근2년간 추진 실적 ※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	별첨 1			
당해년도 주요사업 계획 ※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	별첨 2			

※ 첨부서류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

* 법인설립허가증(사본)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(사본)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

※ 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등

* 단,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시 붙임목록만 제출(증빙자료 실과보관)

[최근 2년간 추진실적]

※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, 당해연도 활동실적 있을 경우 추가기재 가능

(단위 : 천원)

연도	사 업 명	일시(기간)	사 업 내 용	사업비			비고
				계	보조금	자부담	
2021							
	소 계			0	0	0	
2020							
	소 계			0	0	0	

【 2022년도 사업계획 】

※ 국가,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, 서식 적의 변경 가능

(단위: 천원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소 요 금 액				비 고
		계	보조금	자부담	기타	
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						
	4월					
	5월					
	...					
	12월					

거창군 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공고

거창군 파크골프장 잔디생육 기간 잔디 보호 및 시설물 정비로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
같이 휴장 안내 공고합니다.

2022. 3. 7.

거 창 군 수

- 시 설 명 : 거창군 파크골프장(스포츠파크 및 가조 파크골프장)
- 사용제한기간 : 2022. 3. 10.(목) ~ 2022. 4. 30.(토)
※ 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
- 제한(휴장) 사유 : 잔디 생육 기간 잔디 보호 및 시설 정비